

2020년도 제3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1. 25.(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노정동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 | |
|-----------------------------------------------------|-------|
|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
| 2. 전차(제2020-30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
|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
|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
|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
|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964건(안건번호 제2020-157707호~15825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57707호~15825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심의안건 게시물 964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한 22건(안건번호 제2020-3712호~3733호)
 - 회의결과: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12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8개 안건(7개 안건은 부결사유 중 복)을 부결하고, 9개 안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최선언

- 오진해 전문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318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최를 선언함.

2. 전차(제2020-30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전에 대한 회의록 5쪽의 저작물명, 게시판명,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하기 위한 비밀번호, 티스토리명, 7쪽의 게시물명, 8쪽의 게시물명, 티스토리명, 10쪽의 저작권사명, 저작물명, 11쪽과 13쪽의 밴드명, 게시자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제1호 안전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으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C,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2호 안전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게시판명,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하기 위한 비밀번호, 티스토리명, 게시물명, 티스토리명, 저작권사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 부분인 14쪽~40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TV조선', '미국 FOX', '미국 Cinemax',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일본 후지TV', '미국 Showtime', '일본 NTV', '워너브라더스', 'Netflix', 'tvN', 'CGV 아트하우스', 'Adobe Systems Inc.', '미국 CWTV', '일본 Tokyo MX'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B, C, A 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회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6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964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0-157707호~158251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특히 법리에 관해서는 검토보고서의 하급심 판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57707호~15825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수는 964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출판물,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방송 '명탐정 코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57715호는 네이버에서 방송 '명탐정 코난'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한 사안임. 2006. 3. 6.에 방영한 명탐정 코난 2기 49화 더빙판을 제공함. 일본 NTV에서 1996. 01. 08.부터 현재까지 방영중임. 왓차, 웨이브 등에서 유료로 시청 가능함. 게시자명은 '▲▲▲▲▲▲'로 동일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더빙판 영상은 기존 방송국에서 방영된 영상을 그대로 전송한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채증자료를 제시하면서)영상의 우측 상단에 '☆☆☆☆☆☆☆☆☆☆'라는 방송사 마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방송사에서 방영된 영상을 무단으로 공중에 전송한 것으로 추정됨.

(영화 '후쿠오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57861호는 밴드에서 영화 '후쿠오카'를 mp4 파일로 제공함. 해당 저작물은 2020. 8. 27.에 개봉되었으며, 권해효, 윤제문, 박소담 등 출연함.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5,000원에 구매 가능함. 밴드명은'☆☆☆☆ ☆☆☆☆ ☆☆☆'이며, 게시자명은 '☆☆☆☆☆☆☆☆☆☆☆☆☆☆☆☆'임.

(영화 '사냥의 시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57910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사냥의 시간'을 185 포인트에 판매함. 해당 저작물은 2020. 2. 23.에 개봉하였으며,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등이 출연함. 넷플릭스에서 유료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함.

(방송 'Re: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2기'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58024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Re: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2기'를 216 포인트에 판매함.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1화부터 13화 mp4 파일과 함께 smi 파일도 함께 제공함. 일본 AT-X에서 2020. 07. 08.부터 2020. 09. 30.까지 방영하였으며,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490원에 대여 가능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157707호~15825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B, A 위원: 안전번호 제2020-157707호~158251호는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57707호~158251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57707호~158251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7쪽부터 3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712호~3733호 22개 안전 중 13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12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8개 안전(7개 안전은 부결사유 중복)}은 부결하고, 9건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4. 폐회 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3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3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2. 2.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